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계약
안내서(20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안내서(2023년)

환경부
국립생태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계약

안내서(2023년)

“자연의 혜택을 지키는
지역주민을 지원합니다.”



Contents

Part. 0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해하기

- 05 생태계서비스 개념
- 06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의 이해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의 개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필요성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용어 정의
 - 기대효과
- 09 해외 유사 사례

Part. 0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들여다보기

- 1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개요
- 1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 유형
- 1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내용
- 18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용 예시

Part. 0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따라하기

- 2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 2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추진절차
- 2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행정사항
 - 추진협의회 운영
 -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만족도 설문조사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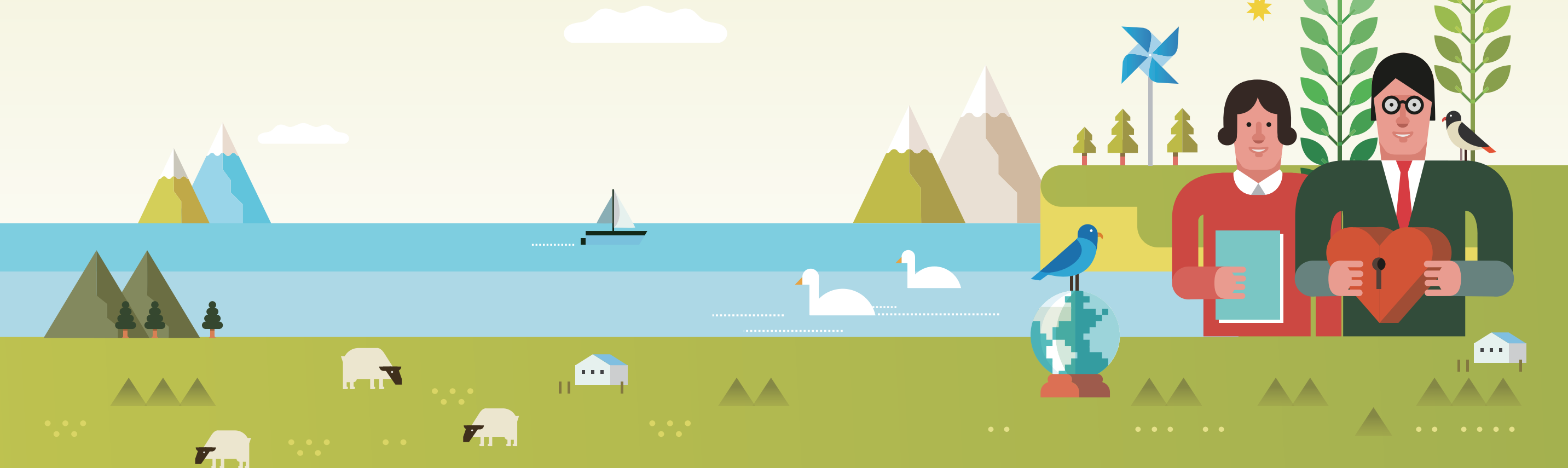
- 29 법률 근거로 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30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
- 3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기별 사업추진 절차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인간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활동에 따른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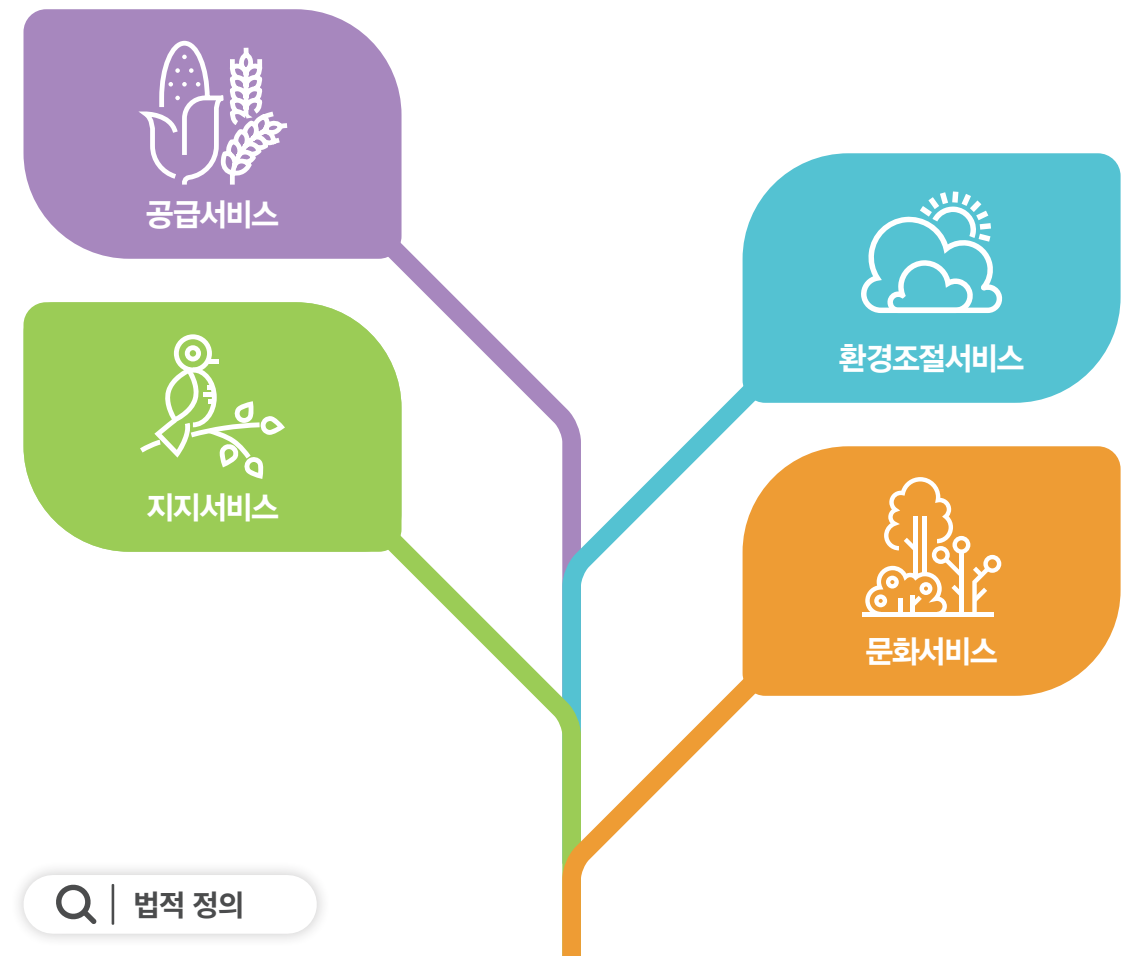
Part. 0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해하기

- 생태계서비스 개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의 이해
- 해외 유사 사례

생태계서비스 개념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을 의미합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기후변화 저감, 재해 방지, 야생동물 서식지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Q | 법적 정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의 이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제도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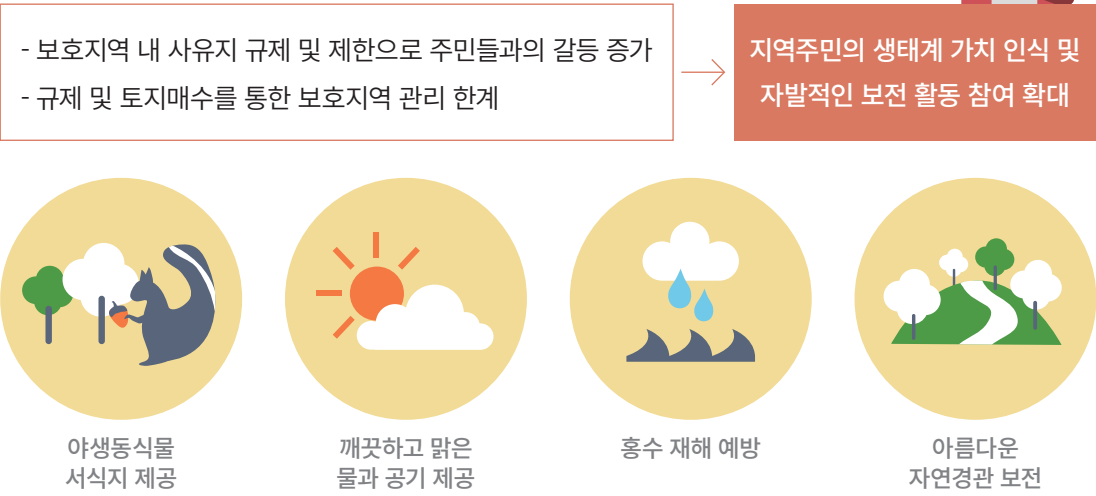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제도란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장이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목적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 지역 주민에게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공익 활동을 지원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 및 생태계 보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9, 10조 ('20년 6월 2일)
보상 대상자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임대자), 관리자
대상 지역	국가 지자체 보호지역, 생태우수지역
활동 유형	- 환경조절서비스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수질 개선, 자연재해 방지 - 문화서비스 : 자연경관 개선, 자연경관 조성, 자연자산 유지·관리 - 지지서비스 : 친환경적 경작, 야생동물 먹이/서식지 제공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필요성

▶ 지역 주민 참여와 혜택으로 생태계 보전



기대효과

지역주민 참여와 소득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연 관리
- 지역주민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소득에 기여
- 방문객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생태계서비스 증진

- 야생생물 먹이, 서식지 제공 등 지지서비스 증진
- 깨끗한 물과 공기, 홍수 예방 등 조절서비스 증진
- 아름다운 경관, 탐방로 정비 등 문화서비스 증진



국민 자연혜택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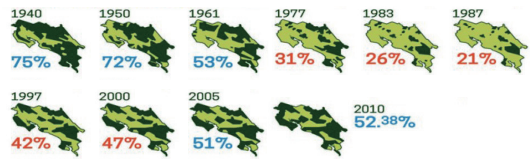
- 방문객 등 국민의 생태계서비스 만족도 증가
- 국가보호지역 확대 지정 및 질적 향상
- 국가보호지역의 생태자산 가치 향상



해외 유사 사례

 코스타리카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책 개요	토지소유자가 산림에 나무를 심거나 관리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금전 보상
정책 목적	자연 산림생태계 재생 및 계획적 목재 생산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생산활동
지급 방식	산림보전, 산림경영, 재조림, 혼농임업 등 계약활동에 따른 지불액 지급
정책 효과	- 전 국토의 산림 면적 1987년 21% → 2010년 52.38%까지 증가 - 산림관리 감시자 및 중재자 등 약 1만 8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발생 - 중소규모의 산림소유자의 소득활동으로 빈곤 감소



 미국 | Catskill 유역관리프로그램

정책 개요	뉴욕 식수로 활용되는 허드슨강 상류(Catskill) 지역주민과 친환경 농업·목축 계약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 지급
정책 목적	Catskill 수질 관리를 위해 정수시설을 대신하여 상류 유역 농업 및 임업 사업 개선 유도
지급 방식	임업·산림경영 방식 전환에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추가적 비용 지원
정책 효과	- 자연정화기능에 의해 정수처리 없이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 - 미량유해물질 등에 의한 건강상 위협을 제거 - 정수처리가 필요 없어 정수비용 절감



기존 대비 약 8조원(6배)의 경제효과 발생



Part. 0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들여다보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 지역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 유형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내용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 예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 지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호 지정한 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에서 신청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생물다양성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은 지역특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 유형

세부 활동 유형은 22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지자체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환경조절서비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유형		세부 활동 유형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식생 군락 조성·관리	1.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하천관리	2. 하천 환경 정화
수질 개선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3.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저류지 조성·관리	4. 저류지 조성·관리
	토양 침식 방지	5. 나대지 녹화·관리
자연재해 방지		

문화서비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유형		세부 활동 유형
자연경관 개선	경관숲 조성·관리	6. 경관 숲 조성·관리
	산책로 조성·관리	7.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자연경관 조성	조망점/축 조성·관리	8. 자연경관 전망대 조성·관리
자연자산 유지·관리	자연자산 유지·관리	9. 생태계보전 관리 활동

지지서비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유형		세부 활동 유형
경작지	친환경 경작	10. 휴경
		11. 친환경 작물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12. 벼 등 미수확
		13. 쉼터 조성 관리
		14. 벼짚 존치
자연재해 방지	생태계 조성·관리	15. 보리·울무 등 재배(신규 추가)
		16. 숲(지역 자생수종) 조성·관리
		17. 습지 조성·관리
		18.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19. 관목 덩굴 조성·관리
		20. 초지 조성·관리
		21. 생태계 교란종 제거
		22.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생물종 서식지 조성·관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내용

▶ 사업시행기관



*「자연공원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우로 사업지역 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관리 하는 비영리법인(생물다양성법 제 1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

▶ 계약대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관리인(법인 및 단체 포함)

※ 사업대상지내 토지의 소유, 점유, 관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 농지원부,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계약기간 : 1년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차년도 사업시 우선순위로 하여
갱신·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단, 계약미이행 및 불성실, 일부 이행 시 **갱신·유지 제외**합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내용

▶ 지원금의 용도

1. 사업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을 위한 활동별 단가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활동별 단가는 활동유형을 토대로 산출하지만, **지자체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환경조절서비스

 기후변화대응 숲 조성·관리	▶ 신청 대상지 : 발전소, 산업단지, 도로 등이 인접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 기 대 효 과 :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 물질 저감 ▶ 지 급 단 가 :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하천 환경정화	▶ 신청 대상지 : 하천변의 환경정화 활동이 필요한 하천구간 ▶ 기 대 효 과 : 하천 생태계 기능 유지 및 향상, 수질 개선 ▶ 지 급 단 가 : 인건비 및 경비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 신청 대상지 : 토양 침식, 주변 오염원 유입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수변 구간 ▶ 기 대 효 과 : 수질 오염 사전 차단, 수질 정화효과, 생태적 기능 향상 ▶ 지 급 단 가 :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저류지 조성·관리	▶ 신청 대상지 : 평상시는 건조한 지역이지만 홍수 등에 의한 침수로 자연재해가 잦은 홍수터, 저지대 등 자연적 환경조절이 필요한 곳 ▶ 기 대 효 과 : 자연재해(홍수, 침식 등)의 예방 및 비점오염 저감 효과, 지하수위 조절, 하천의 유지용수 이용 가능 ▶ 지 급 단 가 :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나대지 녹화·관리	▶ 신청 대상지 : 토양 유실 위험 지역(경사도 1:1.2 이상의 비탈면) ▶ 기 대 효 과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방지, 유용자원(표토) 보전 ▶ 지 급 단 가 :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 문화서비스

 경관숲 조성·관리	▶ 신청 대상지 : 경관숲 조성이 가능한 나대지, 밭, 임야 ▶ 기 대 효 과 :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기여, 환경교육 공간 제공 ▶ 지 급 단 가 :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 신청 대상지 : 생태탐방로 조성 필요 지역 ▶ 기 대 효 과 : 생물자원 보전, 지역자원 가치 인식 증대, 지역 생태문화탐방 활성화 ▶ 지 급 단 가 : 인건비 및 경비
 자연경관 전망대 조성·관리	▶ 신청 대상지 : 조망점, 조망점과의 연결부, 조망축 ▶ 기 대 효 과 : 자연경관 관리와 생태관광 증진효과, 환경교육의 기회 거점 제공 ▶ 지 급 단 가 :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생태계 보전 관리 활동	▶ 신청 대상지 : 자연자산 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기 대 효 과 : 자연자산 보전, 지송가능한 생태계서비스 공급, 자연자산 중요성 인식 증진 ▶ 지 급 단 가 : 인건비 및 경비

🌱 지지서비스

 친환경 경작	▶ 신청 대상지 : 경관숲 조성이 가능한 나대지, 밭, 임야 ▶ 기 대 효 과 :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기여, 환경교육 공간 제공 ▶ 지 급 단 가 :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벼 등 미수확	▶ 신청 대상지 : 생태탐방로 조성 필요 지역 ▶ 기 대 효 과 : 생물자원 보전, 지역자원 가치 인식 증대, 지역 생태문화탐방 활성화 ▶ 지 급 단 가 : 인건비 및 경비
 쉼터 조성 관리	▶ 신청 대상지 : 조망점, 조망점과의 연결부, 조망축 ▶ 기 대 효 과 : 자연경관 관리와 생태관광 증진효과, 환경교육의 기회 거점 제공 ▶ 지 급 단 가 :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벚꽃존치	▶ 신청 대상지 : 자연자산 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기 대 효 과 : 자연자산 보전, 지송가능한 생태계서비스 공급, 자연자산 중요성 인식 증진 ▶ 지 급 단 가 : 인건비 및 경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내용

 보리·울무 등 재배	▶ 신청 대상지 : 철새의 주요 서식지 및 먹이제공 효과가 큰 농지, 가급적 배수가 용이하여 적기에 파종이 가능한 지역 ▶ 기 대 효 과 : 생물다양성 증진, 철새보호 중요성 인식 증진 ▶ 지 급 단 가 : 계약면적 × 면적당 단가 × 피해량(최대25%)
 숲(지역자생수종) 조성·관리	▶ 신청 대상지 : 지역 자생수종 보전(자생하는 수종이 훼손하거나 보전해야하는 경우) ▶ 기 대 효 과 : 지역 야생생물 서식지 유지, 지역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교육 생태관광 효과 창출 ▶ 지 급 단 가 :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습지 조성·관리	▶ 신청 대상지 : 생물서식에 중요한 지역, 수량 유지가 용이한 곳 ▶ 기 대 효 과 : 생물다양성 기여, 수질오염원 제거, 긴급 수원공급, 자연경관 개선 ▶ 지 급 단 가 :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 신청 대상지 : 논경작지, 수량을 유지하기 쉬운 곳 ▶ 기 대 효 과 : 생물다양성 증진, 긴급 수원공급, 수질오염원 제거 ▶ 지 급 단 가 :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관목 덩굴 조성·관리	▶ 신청 대상지 : 산림 주변부 또는 산림 경계부의 훼손지 ▶ 기 대 효 과 : 일반종의 종풍부도 증가와 개체군 밀도 증가, 야생동물의 피난처 역할 ▶ 지 급 단 가 :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초지 조성·관리	▶ 신청 대상지 : 초지의 조성이 가능한 경작지, 방치되거나 훼손된 초지 ▶ 기 대 효 과 :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교육 생태관광 효과 창출 ▶ 지 급 단 가 :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생태계 교란종 제거	▶ 신청 대상지 : 생태계교란종 출현지역 ▶ 기 대 효 과 : 고유 자연자산 생태계 보전 및 생태계 안정성 확보 ▶ 지 급 단 가 : 인건비 및 경비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 신청 대상지 : 멸종위기종 서식 및 분포지역내의 밭, 논, 임야 ▶ 기 대 효 과 : 멸종위기종 보전 및 개체수 향상 ▶ 지 급 단 가 :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2. 운영비(부대경비)

회의수당, 검사 수수료, 모니터링, 조사여비, 계약대상자 교육·컨설팅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단, 당해 총사업비(국고+지방비)의 15%이내에서 편성하되 그 금액이 30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편성시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운영비 참고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수당 등
- 수요조사·모니터링·평가 등을 위한 자문수당, 안내판 제작, 검사 수수료 등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교육 강사료, 교재제작 등
- 그 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

▶ 지원 제한

- 동일한 대상지역에 **동일·유사 활동내용의 타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의 세부 활동유형고 중복시 지원제한됩니다.
- 기초지자체는 사업계획신청 및 계약 시 중복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중복 사업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 정산 및 결과보고를 미실시하거나 불성실하게 실시할 경우
 -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 우선순위

사업타당성 및 필요성, 생태적 특성 등 **객관적 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합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용 예시

예시 1 지지서비스(야생생물, 서식지) 증진 활동에 참여했을 때



Q 유기농 재배를 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더 많은 생산비가 들어 소득이 감소할 것 같은데요?

A 감소하는 소득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주고, 참여활동을 통해 토지나 작물이 더 건강해집니다. 또한 벼짚 존치를 동시에 시행해 두루미의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널리 소개될 수 있습니다.

Q 유기농 재배와 벼짚 존치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유기농 재배의 경우 해당 작물의 기존 소득 감소분(30%)과 생산비 증가분(30%)을 합한 금액을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벼 수확 후 벼짚을 존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지역의 벼짚 판매 가격을 반영하여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지불 단가와 금액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주민의 손실과 활동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서 더 건강한 쌀을 공급하고 자연을 지킨다는 보람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보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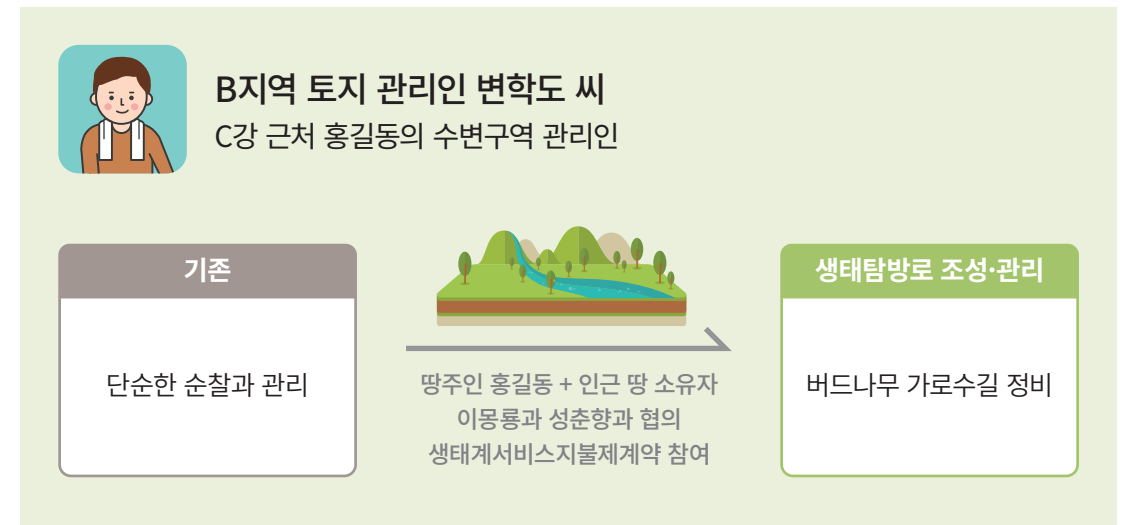
친환경 경작 보상액 소득감소분(150만 원=5백만 원(기존소득) × 30%) +
생산비 증가분(90만 원=3백만 원(기존생산비) × 30%) = 240만 원

벼짚 존치에 따른 보상액 500,000원/ha(현지 벼짚 판매가격) × 1ha(계약토지면적) = 50만 원

홍길동 씨는 총액 2,900,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금액은 가상으로 제시하는 지불금으로써 실제 지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문화서비스 활동에 참여했을 때



Q 땅주인이 아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땅주인과 협의하여 실제 조성과 관리를 집행하는 관리인이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공동사업도 가능한가요?

A 기본 원칙은 개인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이 넓은 경우에는 법인,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공동사업이 가능합니다.

Q 생태탐방로 조성관리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A C강변은 5,000㎡ 면적이며, 산책길은 흙을 다져서 1,000㎡를 조성할 경우 2,70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A 지역의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게 되겠다는 기대와 자연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 데에 대해 자긍심을 보너스로 보상받습니다.

보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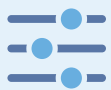
생태탐방로 조성관리에 따른 보상액 1,000㎡ × 2,700원/㎡ = 2,700,000원

변학도 씨는 총액 2,700,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금액은 가상으로 제시하는 지불금으로써 실제 지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기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가이드라인에서 개정되어 **사업은 확대**되고 **절차는 구체화** 되었습니다.

 1. 국가보조율 상향	30% (기존) 국가보조율  50% (개정) 국가보조율
 2. 지원 사업 확대	- 기존 22개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부합하는 사업 포괄적 제시 - DMZ 접경지역 두루미 보호 등 보전활동 확대를 위해 버, 보리 외 울무재배 등 추가
 3. 사업 우선순위	- 사업타당성 및 필요성, 생태적 특성 등 객관적 검토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필요시에는 전문기관, 담당 지자체, 환경청 등의 현장 확인 수행
 4.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한	- 타부처 유사사업*과 중복 시 지원 제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세부사업 중복성 검토(지자체)
 5. 모니터링 및 평가절차	- 사업유형별 모니터링 항목, 시기·횟수, 평가 등 절차 구체화 - 모니터링 :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모니터링 계획 포함(예산도 포함), 이행과 결과보고 등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화 - 평가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사업효과성 평가 추진(환경부에서 필요시)
 6. 사업만족도 조사	-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만족도 설문 조사 및 결과보고 지자체 → 환경청 → 환경부
 7. 사업계획 변경 신설	-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 절차 추가 *사업유형 및 대상지역, 예산편성, 모니터링 계획 변경 등



Part. 0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따라하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추진절차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행정사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추진 절차

추진절차에서 지역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1

[계약체결 전] 사업시행기관(지자체)에서 **계약대상자 사전교육**
사업시행기관(지자체)에서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중요성, 사업의 목적, 의의,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이행점검 및 평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 2

[계약체결 후] 계약된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활동을 실시하고 이행 내용을 기록, 증빙**
- 3

[계약이행 완료 후]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만약,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 하게 됩니다. (시기별 사업추진절차는 부록 31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단 계	구 분	내 용
1단계	시행준비	사업계획수립지침 시달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 제출
2단계	대상선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업계획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사업확정
3단계	이행준비	사업계획 공고 및 계약대상자 선정
		계약대상자 사전교육 계약 체결 및 선금금 지급
4단계	계약이행 및 점검	계약활동 이행(설문조사서 작성 포함)
		계약내용 이행점검(모니터링 포함) 계약내용 불이행 및 부실이행시 조치
5단계	정산 및 결과보고	잔금 지급 및 정산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모니터링 결과 포함, 설문조사서 취합 제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행정사항

▶ 추진협의회 운영

1. 구성

- 사업시행기관(지자체 등)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원활할 추진을 위해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추진협의회는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와 사업지역 주민 대표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농업기술센터, 농협, 영농법인, 사업지역주민, 대학 및 연구소등
 - 기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과 관련된 단체 또는 전문가
 - 위원은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자체 내에 소재하는 기관, 단체 등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2. 기능

- 추진협의회에서는 내실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자문이나 심의·의결 합니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및 활동유형, 단가선정에 관한 사항
 - 계약대상자의 교육 및 사업차여 컨설팅에 관한 사항
 - 계약내용 이행계획 수립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계약금액, 계약 불이행 및 부실이행에 관한 사항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운영방식

- 추진협의회는 위원의 요청 또는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같은 운영비(부대경비)등 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편성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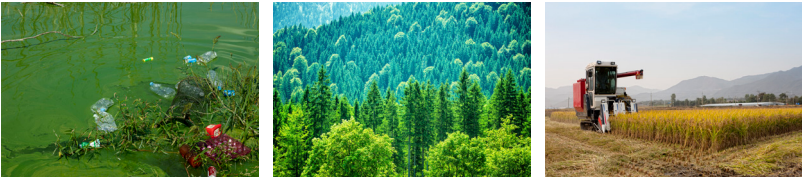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행정사항

모니터링 및 평가

1. 목적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생태계서비스 및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기록함으로써 사업이 효과 있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됩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전



하천 수질 개선 숲 산책로 조성 벼짚존치로 철새 먹이제공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후



2. 방법

구 분	내 용
 모니터링 예산 확보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사업유형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목표하는 생태계서비스나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관찰,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유형별 기준 준수	모니터링 항목과 조사 횟수, 시기는 사업유형별 기준을 준수하되, 사업 지역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기관 의뢰 및 지자체 조사결과 활용	모니터링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할 수 있고, 만약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생태·환경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하여도 됩니다. ※ 단,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지자체 생태·환경조사 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의 사업유형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경부 제출	모니터링 결과는 매년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할 때 환경부에 제출해야합니다.

3. 모니터링 항목

- 모니터링 항목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일관되게 관찰하여서 사업 효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생태계서비스 계약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지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모니터링 해서 생태계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면 됩니다.

활동유형



지지서비스

생물다양성 증진 또는
목표종, 개체수 증감 등의
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



환경조절서비스

사업 후에 토양침식,
토양화학성 잔류농약, 수량,
수질, 탄소흡수량 등을 평가



문화서비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주민과 탐방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인식, 참여만족도, 정책만족도)

4. 조사 항목

 생물조사	식물,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저서동물 등
 환경조사	토양화학성, 잔류농약, 토양침식, 담수량, 수질, 대기정화, 탄소흡수량 등
 설문조사	지역주민 및 탐방수요자의 인식, 참여, 수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행정사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유형별 모니터링 기준

	구 분	항목	모니터링 항목	조사횟수및시기	비고
환경 조절 서비스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대기정화	SO2, NO2, O3, 미세먼지(PM10) 등	사업시행 전·후 비교(2회/연)	
	하천 환경 정화	수질정화	T-N(총질소량), T-P(총인량)	사업시행 전·후 비교(2회/연)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수질정화	T-N(총질소량), T-P(총인량)	사업시행 전·후 비교(2회/연)	
	저류지 조성·관리	수량변화 (저류량 및 수위 변화도%)	우기시 습지의 홍수량 또는 홍수위	사업시행 전·후 비교(2회/연)	
	나대지 녹화·관리	토사유출량 변화도(%)	토사유출량 산정	사업시행 전·후 비교(2회/연)	
문화 서비스	경관숲 조성·관리	정책 및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주민의식, 탐방객 인식, 체험·참여 만족도	사업시행 후 (1회/연)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정책 및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주민의식, 탐방객 인식, 체험·참여 만족도	사업시행 후 (1회/연)	
	자연경관 전망대 조성·관리	정책 및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주민의식, 탐방객 인식, 체험·참여 만족도	사업시행 후 (1회/연)	
지지 서비스	휴경	잔류농약	잔류농약 검사	사업시행 후 (1회/연)	
	친환경 작물 경작	잔류농약 친환경 인증	잔류농약 검사 유기농/무농약 인증	사업시행 후 (1회/연)	
	벼 등 미수확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동·식물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사업시행 중 (1회/연)	조류, 포유류, 곤충, 양서·파충류 등
	쉼터 조성 관리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동·식물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사업시행 중 (1회/연)	조류, 포유류, 곤충, 양서·파충류 등
	벚꽃 존치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동·식물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사업시행 중 (1회/연)	조류, 포유류, 곤충, 양서·파충류 등
	보리·울무 등 재배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동·식물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사업시행 중 (1회/연)	조류, 포유류, 곤충, 양서·파충류 등
	숲 조성·관리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동·식물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사업시행 중 (1회/연)	조류, 포유류, 곤충, 양서·파충류 등
	습지 조성·관리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동·식물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사업시행 중 (1회/연)	조류, 포유류, 곤충, 양서·파충류 등

	구 분	항목	모니터링 항목	조사횟수및시기	비고
지지 서비스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동·식물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사업시행 중 (1회/연)	조류, 포유류, 곤충, 양서·파충류 등
	관목 덩굴 조성·관리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동·식물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사업시행 중 (1회/연)	조류, 포유류, 곤충, 양서·파충류 등
	초지 조성·관리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동·식물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사업시행 중 (1회/연)	조류, 포유류, 곤충, 양서·파충류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동·식물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사업시행 중 (1회/연)	조류, 포유류, 곤충, 양서·파충류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동·식물 목표종 개체수 변화량	사업시행 중 (1회/연)	조류, 포유류, 곤충, 양서·파충류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만족도 설문조사

- 사업 종료 후 계약대상자(지역주민)를 대상으로 사업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지자체는 설문조사를 취합하여 환경부로 제출합니다.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에 활용되니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마음껏 작성해주세요.

설문조사표

【서식8】

(작성지: 계약대상자)

사업참여자 인식 및 만족도 설문조사

일반적 특성현황 및 참여실적

문1. 귀하의 연령은? ()세

문2. 귀하가 지병제 활동한 지역은? ()읍면

문3. 참여한 지병제 활동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만족도

문1.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름다 ② 이름만 들어 본 정도이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자세히 알고 있다

문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2-1.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문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제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 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활동 유형(내용)					
· 보상금 단계					
· 계약 규모(면적)					
· 행정절차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효과성

문1.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문2.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환경보전 및 증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 및 증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문3.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소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문4.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개선사항

문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문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희망하는 지역 또는 사업유형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지 역	사업유형

법률 근거로 다시 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1. 기본 개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2. 제도의 법적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6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3. 사업 대상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 12조 생태·경관보전지역
- 습지보전법 제8조 습지보호지역
- 자연공원법 제2조 자연공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33조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지역(생물다양성법 제16조 제1항 제6호)
 -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 *지역 특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해야합니다!
-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제9조의2)
 -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 습지보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부록

- 법률 근거로 다시 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기별 사업추진 절차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은 아래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환경조절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법 제2조제10호나목)

- 식생 군락 조성이나 관리 등 온실가스의 저감
- 하천 정화 및 식생대의 조성·관리 등 수질의 개선
- 저류지의 조성하거나 관리 등 자연재해의 저감

2. 문화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 경관숲·산책로를 조성하거나 관리 및 식물식재 등 자연경관을 유지하거나 개선
-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이나 조망축을 조성하거나 관리
- 자연자산을 유지하거나 관리

3. 지지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 휴경하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경우
: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면적 × (단위면적당) 손실액
*농경지에서 경운 및 작물의 재배를 하지 않고 쉬는 것
- 친환경적으로 경작하는 방식 또는 재배 작물을 변경한 경우
: ① (수확량이 감소 된) 면적 × (단위면적당) 손실액
②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의 변경에 필요한 금액
- 습지 및 생태운덩이 등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습지 및 생태운덩이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그 조성이나 관리에 필요한 금액
-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성이나 관리에 필요한 금액

4. 그 밖에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활동

: (해당 활동으로 인한) 손실액 및 필요한 금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기별 사업추진 절차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시기별 사업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단계	시기	주요 내용
1. 시행준비	전년도 1~2월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 환경부 → 환경청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전년도 3월	▪ 사업계획서 제출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환경청 →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 환경부
	전년도 4~5월	▪ 사업계획서 검토(환경부) -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관련 전문기관, 환경청, 기초지자체)
2. 대상선정	전년도 12월	▪ 보조금 확정(환경부 → 광역지자체, 국립공원공단)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사업추진계획 수립(기초지자체, 국립공원공단)
	1~12월	▪ 보조금 교부(환경청 → 광역지자체,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 사업공고(기초지자체, 국립공원공단) ▪ 계약청약서 제출(계약대상자) ▪ 계약대상자 선정(기초지자체, 국립공원공단)
3. 이행준비	1~12월	▪ 사전교육(관련 전문기관 → 기초지자체 / 기초지자체, 추진협의체 → 계약대상자) ▪ 계약이행 계획서 작성(계약대상자) ▪ 계약체결 및 선금금 지급(기초지자체, 국립공원공단)
4. 이행 및 점검	1~12월	▪ 계약활동 이행 및 결과보고(계약대상자) ▪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기초지자체, 환경청, 국립공원공단)
5. 정산 및 결과보고	11월~차년도 2월	▪ 계약내용 불이행 및 부실이행 조치(기초지자체, 환경청, 국립공원공단) ▪ 잔금 지급(기초지자체, 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차년도 1월 ~ 차년도 3월	▪ 정산 및 사업 추진 결과보고(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환경청 →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 환경부)

※ 사업시행기관 실정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은 자체 조정 가능